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공고)

우리 군 관내에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 처리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3일

태 안 군



1. 공시송달(공고) 기간 : 2020년 4월 3일 - 2020년 4월 20일 (17일간)

2. 공시송달(공고) 대상 : 불임참고

3. 의견제출

가. 방문 : 태안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 041-670-2718)

나. 우편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건설교통과 (FAX 041-670-1526)

4.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견진술(권리행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매) 후 직권말소 조치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시송달(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5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공매)할 때에는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폐기됩니다.

불임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 유 자		보관장소	비고
		성 명	주 소		
30우3590	마티즈	배*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본말길 **-(선감동)	태안폐차장(주)	
77누2627	그랜드 카니발	현*****원(주)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호로 ***	태안폐차장(주)	
10더2899	무쏘	주*****텍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4길 **	태안폐차장(주)	
88서1743	포터 II	(주)재**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제내1공단길 **-**	태안폐차장(주)	